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89호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군산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에 따른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군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대외협력계장이 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

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table>
<tr><td>출장목적</td><td colspan="6"></td></tr>
<tr><td>출장동기
및 내용</td><td colspan="6"></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6">. . . ~ . . .(일간)</td></tr>
<tr><td>출 장 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7">출 장 자</td><td rowspan="2">소속</td><td rowspan="2">직급</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출 장 경 비</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명</td><td></td><td></td><td>천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군산시 공고 제2026-15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후생복지 사업(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 및 운영방법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는 조항 신설
- 예산 별도 편성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액 내에서 맞춤형복지 사업 확장성 도모

○ **후생복지사업 시행목록 확대(안 제7조제8호)**

-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 가능한 후생복지사업 목록에 건강검진·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입법예고 : 2026. 2. 2. ~ 2. 23.(21일)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454-2235 / (FAX) 063-454-6005

(전자우편) kmjmj467@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총무계(063-454-2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강검진·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① ----------.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강검진·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
8.·9. (생 략)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6 - 167호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센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사용 신청, 변경, 허가절차 규정(제2조)

나. 변상책임, 원상회복 책임 규정(제3조)

다. 사용료 감면절차 규정(제4조)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전 화) 063-454-2673 / (FAX) 063-454-6013

(전자우편) tlsdltmf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063-454-2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2]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호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시관·회의실 사용료 감면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감 면 기 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6조제2항제1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율 적용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6조제2항제2호	○ 감면 신청의 타당성 및 공익상 특별한 사유, 비영리 목적 등 행사 성격 제반사항 검토 ○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율 적용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6조제2항제3호	○ 센터 자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면제 ○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 할인율 적용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 )
	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	국 문 명		영 문 명	
	홈페이지			
	행사내용	- 참석인원 ( )명 - 참가업체수 국내 (개사), 국외 (개사)		
사용기간	준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철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장소	회 의 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VIP회의실
	전 시 관	실 내		야 외	
	기타시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 회의실 / 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업 체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사업자(법인)
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담 당 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
(FAX)</td><td colspan="4">( )</td></tr>
<tr><td>주 소
(사무소 소재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개최행사</td><td>국 문 명</td><td colspan="2"></td><td>영 문 명</td><td colspan="4"></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7">변 경
내 역</td><td rowspan="4">사용
기간</td><td>구 분</td><td colspan="3">변 경 전</td><td colspan="4">변 경 후</td></tr>
<tr><td>준비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행사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철거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rowspan="4">사용
장소</td><td rowspan="2">회의실</td><td>대
회의실</td><td>중
회의실</td><td>소
회의실</td><td>VIP
회의실</td><td>대
회의실</td><td>중
회의실</td><td>소
회의실</td><td>VIP
회의실</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전시관</td><td colspan="2">실 내</td><td colspan="2">야 외</td><td colspan="2">실 내</td><td colspan="2">야 외</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기 타</td><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변경사유</td><td colspan="7"></td></tr>
</table>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 회의실 / 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성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사업자(법인)
등록번호</td><td></td></tr>
<tr><td>상 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
(FAX)</td><td>( )</td></tr>
<tr><td>주 소
(사무소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개최행사</td><td>한 글</td><td colspan="2"></td><td>영문약칭</td><td></td></tr>
<tr><td>영 문</td><td colspan="4"></td></tr>
<tr><td>사용기간</td><td></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rowspan="5">사용장소</td><td rowspan="2">회의실</td><td>대회의실</td><td>중회의실</td><td>소회의실</td><td>VIP회의실</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전시관</td><td colspan="2">실 내</td><td colspan="2">야 외</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기 타</td><td colspan="4"></td></tr>
<tr><td>감면금액(원)
/감면비율(%)</td><td colspan="5"></td></tr>
<tr><td>감면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실 / 회의실 / 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26-1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6건, 분할 1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1.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43-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89	20260108	건물신축	20100125	서원로와 석곡로의 복합명사화 하여 사용	
2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89	-	20260107	건축물대장 말소	20100125	서원로와 석곡로의 복합명사화 하여 사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30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송호로 61-12	20260108	건물신축	20100125	개정면 운회리 송호1구,2구 통과도로로 지역명칭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89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남내로 289-24	20260108	건물신축	20100125	마을명칭인용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41-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46-24	20260108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156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회미로 793	20260108	건물신축	20100125	신란 경덕완 8년(서기749년)때 현 회현면이 회미현 인용	
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02-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공항북로 107	20260108	건물신축	20121203	공항 진입도로	
8	건물번호 분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2길 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2길 54-1	20260102	건물번호 분할	20070528	고봉리 고봉 마을소재	
9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547-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당길 34-15 (미룡동)	2026010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4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1길 37	20260107	건물신축	20070528	증석일구 마을 소재	

1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15-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왕길 84-6	20260106	건물신축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1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8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왕길 85	20260106	건물신축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1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825-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라로 150-25	20260106	건물신축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1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87-14, 58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75-24	20260102	건물신축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1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800-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용두길 83	20251231	건물신축	20110329	용성마을과 창성마을 사이에 용머리라는 산이 있었음	
1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하포로 422-15	20251231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16-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399	20251231	건물신축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명칭 인용	
18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521-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촌안3길 47 (경암동)	20251231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6-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3-151호(2023.9.15.) 및 제2023-183호(2023.11.17.)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외 27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나. 명 칭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부지면적 : 317,728㎡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내용
317,728	주11동/ 지하1~지상5층 부5동/지상2층	10,592.27 * 건폐율 3.33%	14,736.79 * 용적률 4.32%	금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증축

- [금회] 주10동 증축계획 취소(연면적 감63.64㎡), 부4동/1층 증축(연

면적 증305.5㎡), 부5동/1층 증축(연면적 증176㎡)

- 가설건축물 3동(연면적 650㎡) 2026.11.5.일까지 존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군산시장(자원순환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3. 9. 15. ~ 2025. 12. 31. / [변경] 2023. 9. 15. ~ 202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내초동	201-7	잡	20,781	20,7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202-7	잡	32,446	32,44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202-20	도	1,581	1,5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203-8	잡	32,887	32,88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		204-8	잡	33,880	33,8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204-20	도	1,487	1,48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205-8	잡	34,220	34,22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206-9	잡	34,502	34,50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206-21	도	1,410	1,41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207-9	답	35,357	35,35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208-9	답	35,645	35,64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208-26	답	2,808	1,8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209-9	잡	9,828	9,82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209-10	답	9,808	9,80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209-11	구거	6,912	6,91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6		209-15	구거	4,959	4,95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7		209-16	구거	4,959	4,95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8		226-59	구거	79	7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9		226-60	구거	1,017	1,0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0		226-61	구거	1,967	1,96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1		226-62	구거	994	9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2		226-63	구거	2,728	2,72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3		226-64	구거	1,014	1,0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4		226-65	구거	2,821	2,82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5		226-66	구거	993	99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6		226-67	구거	2,588	2,58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7		226-72	구거	772	77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8		226-85	구거	198	19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28필지		318,641	317,728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6-1호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의 기본계획 수립(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일원
4. **사 업 비** : 6,000백만원 (국 4,200 , 도 540 , 시 1,260)
5.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5년)
6.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힐빙어울림센터(복합청사) 조성

   나. 지역역량강화

- 중심지 기능강화 힐빙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문화복지 전달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랑배달꾼 양성, 공동체 교류 한마당 등

다. 부대비용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7. 사업효과 : 복합청사 조성으로 행정·문화·복지·여가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강화,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활성화 도모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9.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7,270	1,247		
1	옥산면	옥산리	23-10	답	139	139	전라북도(교육감)	
2			647-1	도로	18	18	국(건설부)	
3			16-10	답	998	998	전라북도(교육감)	
4			23-1	학교용지	1,408	26	전라북도(교육감)	
5			27-1	학교용지	1,158	4	국(교육부)	
6			8	학교용지	3,549	62	전라북도(교육감)	

9.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계(☎063-454-483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6 - 132호

미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1. 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 16. ~ 2026. 2. 6.(22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6. ~ 2026. 2. 6.(22일간)
4.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미원 지구	군산시 미원동 397-8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가	29,239㎡	배수체계가 미흡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가 원활히 되지않아 저지대 위주 상습 침수 발생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미원 지구	2027년 ~2031년	34,557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개소 - 우수관거 정비 L=1,500m	

※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내용,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63)454-3863

· 팩스 : 063)454-603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현황평면 및 지형도면 각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 현황평면도

□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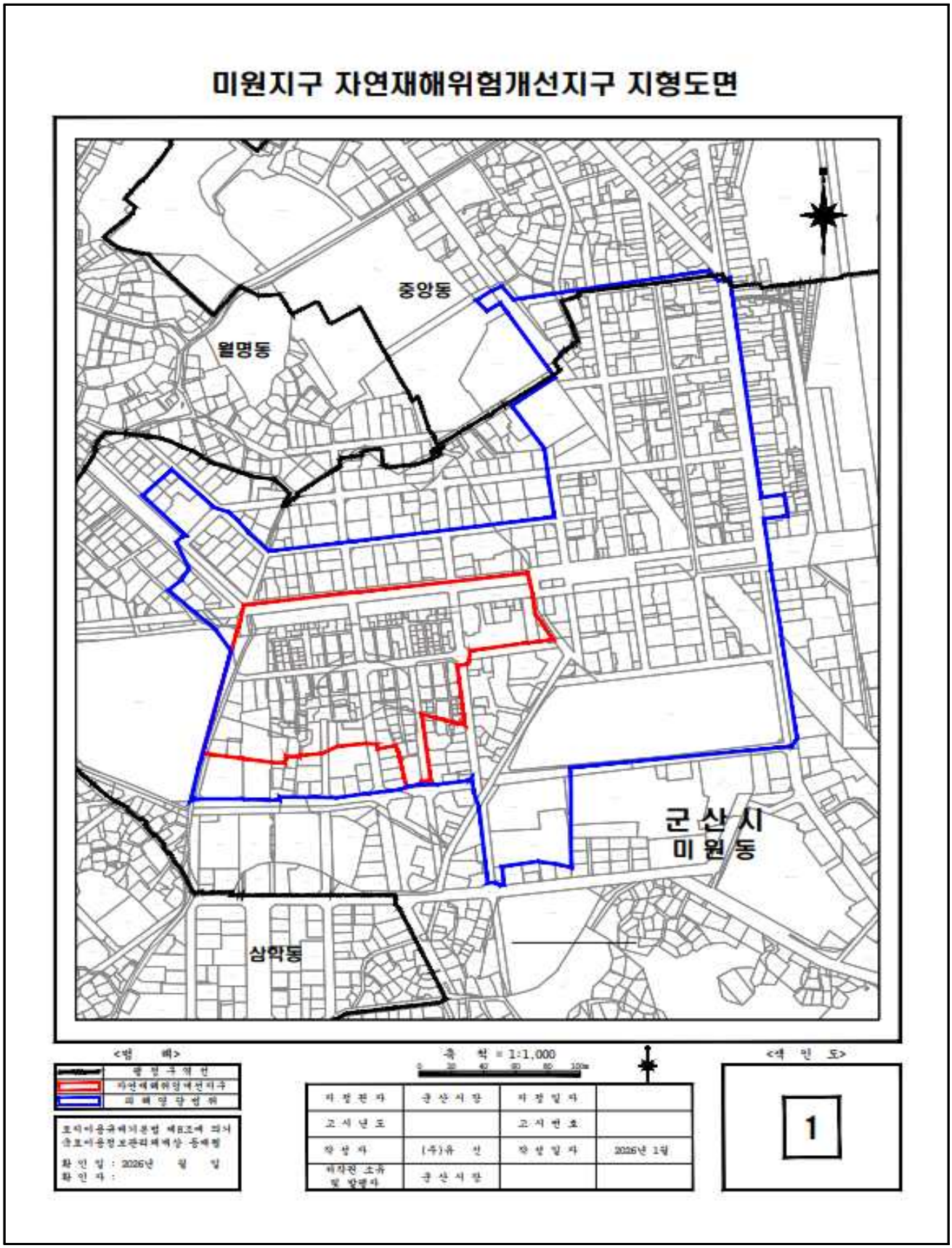
미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중앙동
월명동
군산시
미원동
삼학동
<범 례>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영향범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국토이용정보관리체계상 등재됨
확인일 : 2026년 월 일
확인자 :
축 척 = 1:1,000
0 20 40 60 80 100m
지정권자 군산시장 지정일자
고시년도 고시번호
작성자 (주)유 신 작성일자 2026년 1월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군산시장
<색 인 도>
1

□ 피해사진

'2025년 집중호우 시 도심지 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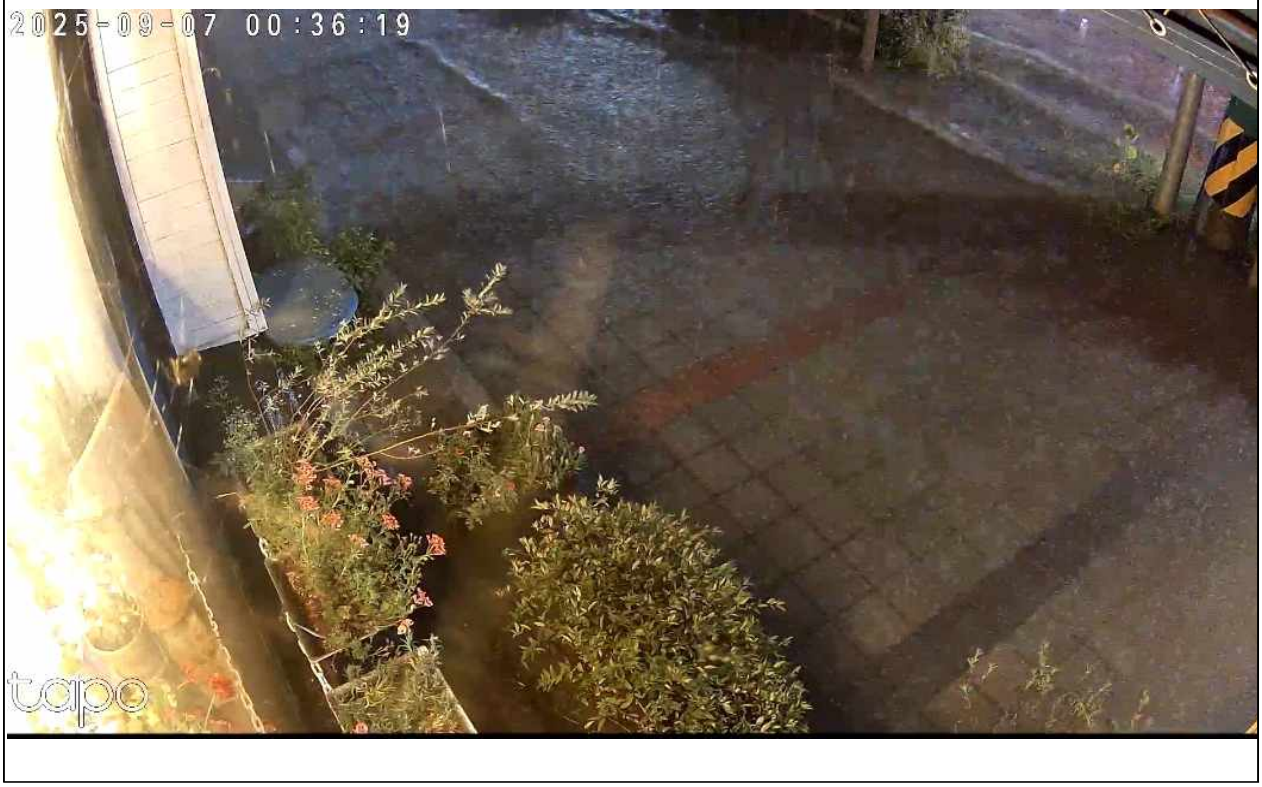

'2025년 집중호우 시 도심지 침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일반번호	
3. 의 견				
4. 기 타				

미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6 - 133호

어청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청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 주거지 인근 급경사 사면재해 발생 위험 요인과 주거지를 관류하는 배수로 통수능 부족 및 일부구간 제방고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사면붕괴 및 침수피해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항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01. 16. ~ 02. 06. (22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01. 16. ~ 02. 06. (22일간)

4.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063-454-6030)

다. 제출기한 : 2026. 01. 19. ~ 02. 09. (22일간)

라.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454-386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 지구현황 및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어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50-4 일원	붕괴위험지구	나	28,275	
		침수위험지구		10,200	

○ 지정사유 :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주거지 인근 급경사 사면부의 절리 발달 및 블록 이탈 위험과 주거지를 관류하는 배수로 통수능 부족 및 일부구간 제방고 부족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를 통해 재해요인을 해소코자 함.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예정)

지구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시기	비고
어청도	40,400	- 급경사지 정비 1식 - 배수로 및 우수관로 정비	2027년 (예정)	

※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내용,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붙임 1. 현황평면 및 지형도면 각 1부.
2.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 현황평면도

총연장(L=1,380m)
제1지구(1,200m)
구조물보강
사면경사완화
계측시설
BOX B1.0×H1.0 신설
L=130.0m
D800→BOX B1.0~1.2×H1.0
L=140.0m
D600→BOX 1.0×1.0
L=55.0m
배수로 재방증고(H=0.2~0.8m)
L=25.0m
자연수로 W3.0×H1.0→W5.5×H1.0
L=160.0m
창고이주 2동
제2지구(180m)
사면경사완화
정비사업 추진계획
□ 내수재해 방지대책
- 배수로 정비 : ①자연수로 확폭 W3.0×H1.0 → W5.5×H1.0, L=160m
②배수로 재방증고(H=0.2~0.8m), L=25m
- 우수관로 정비 : (개선) D600~800 → BOX B1.0~1.2×H1.0, L=195m
(신설) BOX B1.0×H1.0, L=130m
□ 사면재해 방지대책
- 계단식 옹벽 : H=10.0~15.0m, L=500.0m
- Anchor 공법 : 약 1,000공
- 사면경사완화 및 산마루측구 : L=880m
- 원격해 방호시설 : L=1,380.0m
- 계측시설 1식

□ 지형도면(어청도지구) (1/3)

※「토지이용기본 규제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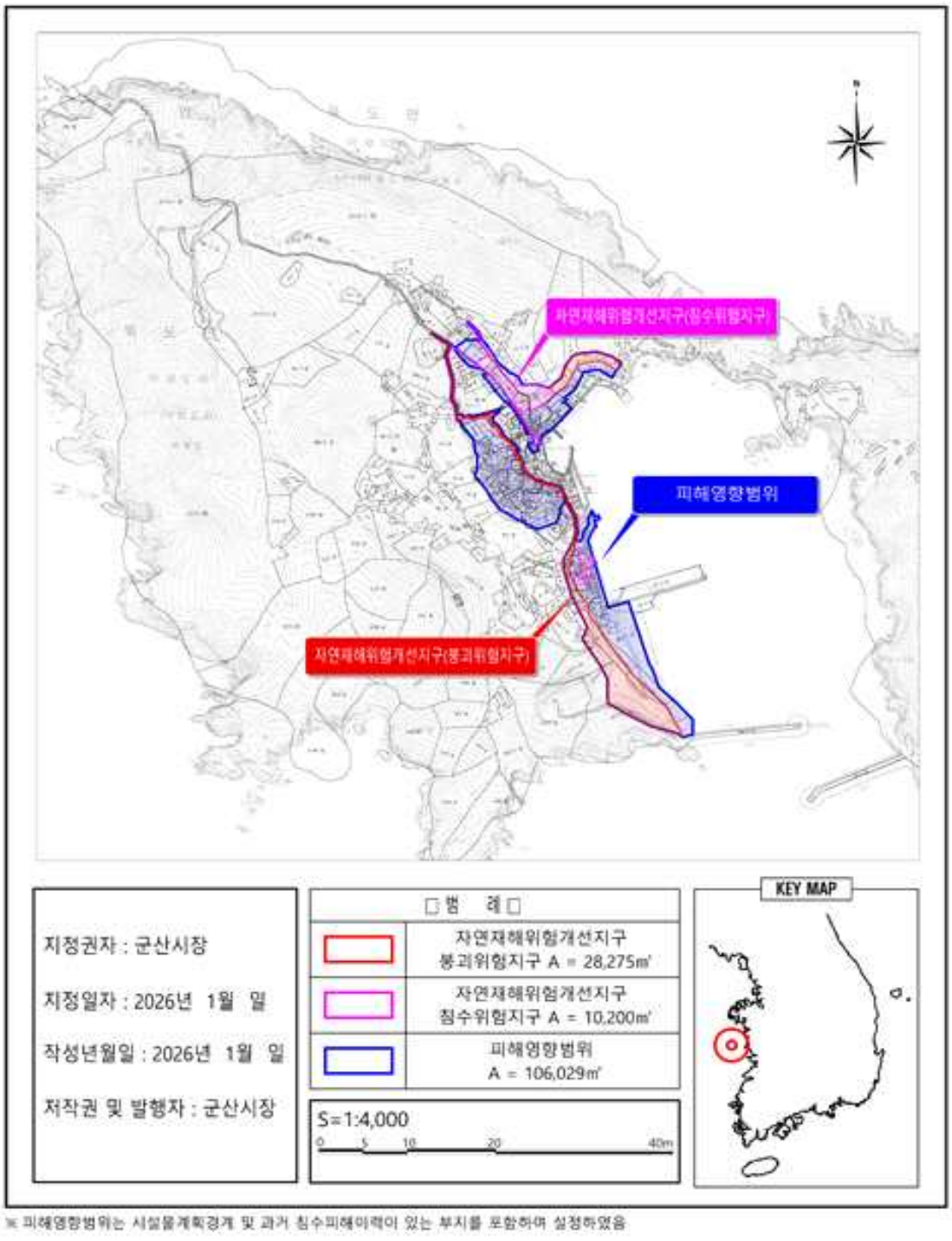

□ 지형도면(어청도지구) (2/3)

※「토지이용기본 규제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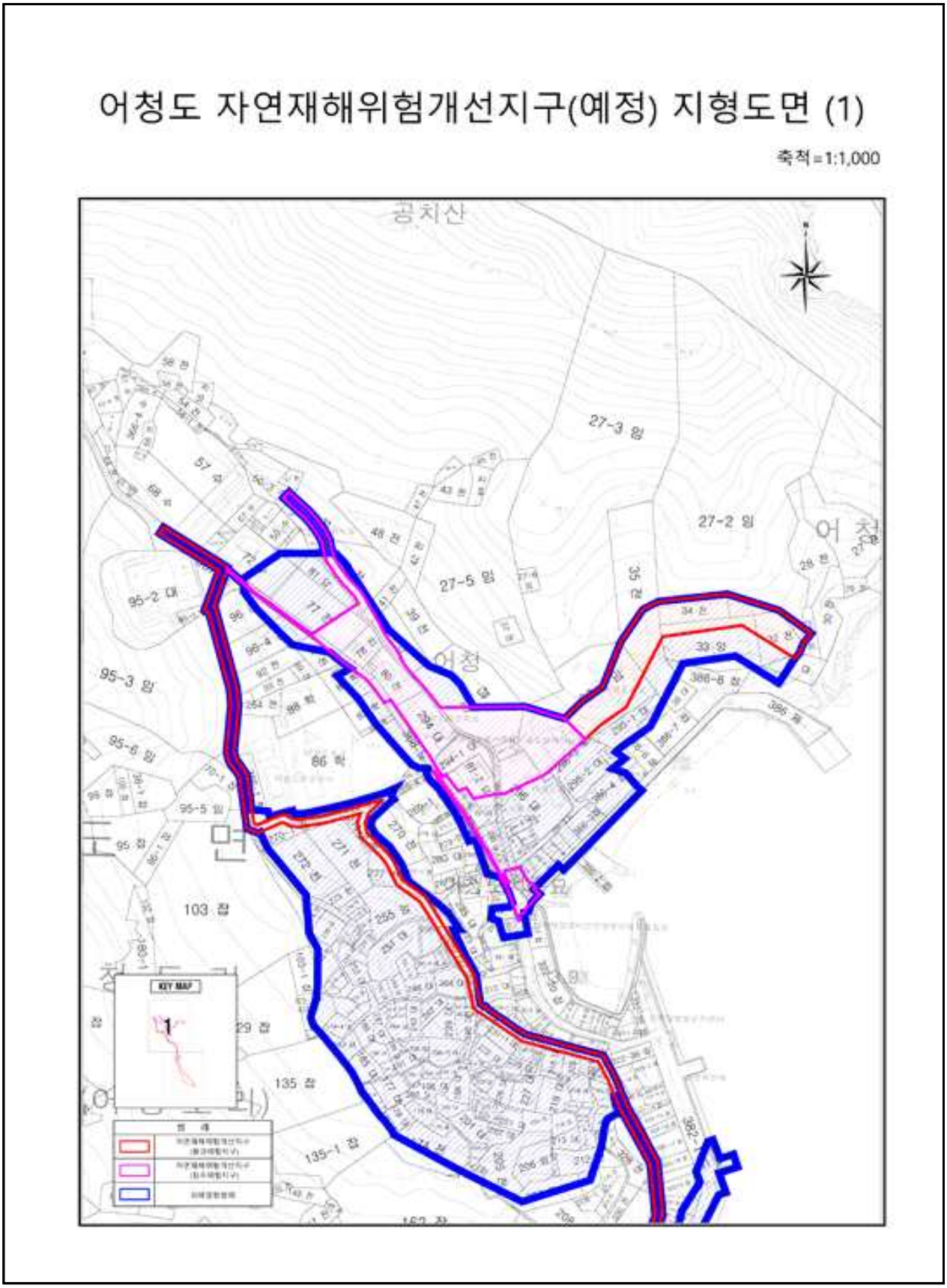

□ 지형도면(어청도지구) (3/3)

※「토지이용기본 규제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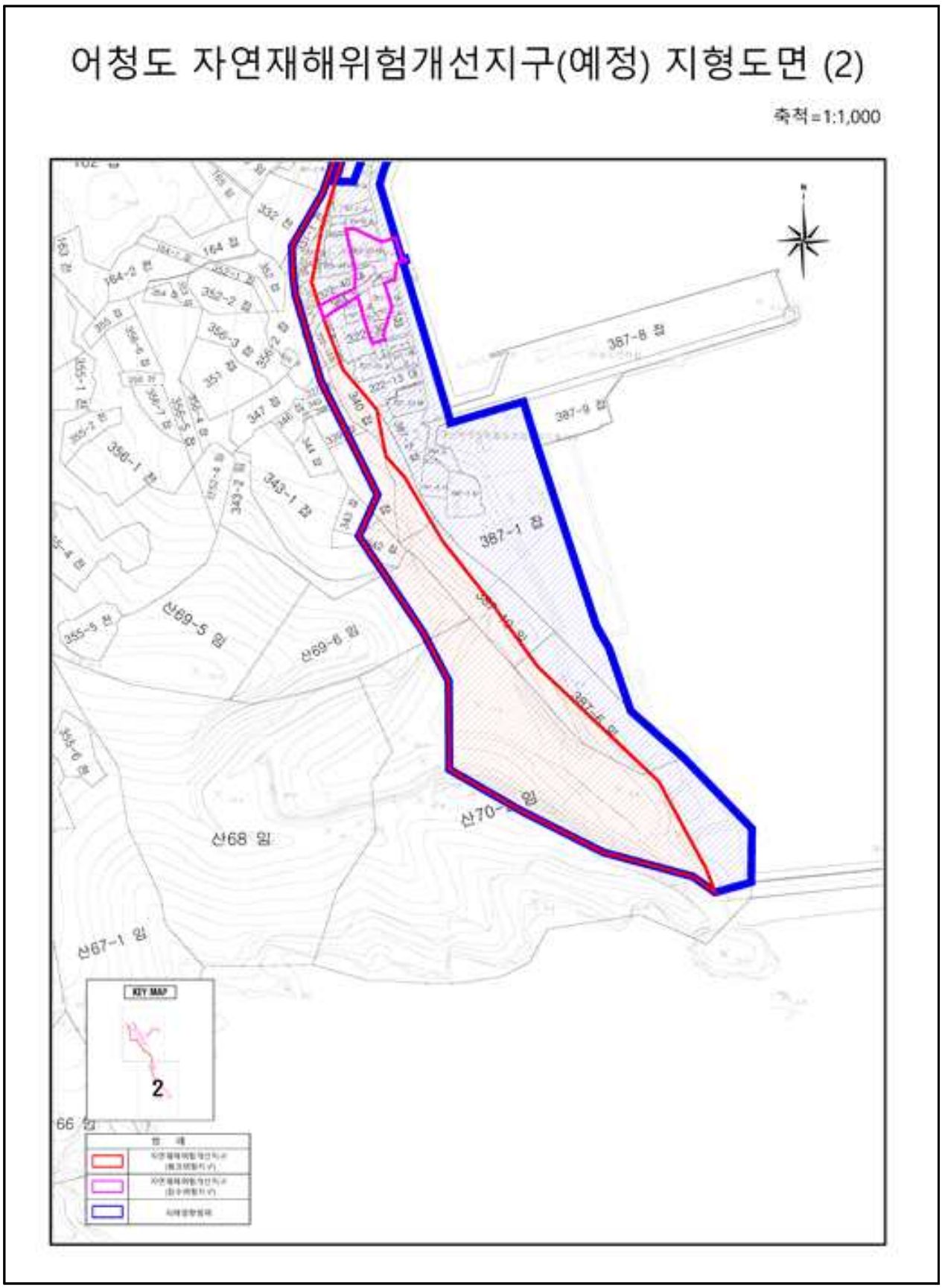

□ 피해사진(어청도지구) (1/2)

2024년 집중호우 시 취락지역 침수(출처 : 연합뉴스 TV)

2024년 집중호우 시 취락지역 침수(출처 : 연합뉴스 TV)

□ 피해사진(어청도지구) (2/2)

2024년 급경사지 붕괴(출처 : KBS)

2024년 급경사지 붕괴 및 낙석피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어청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일반번호	
3. 의 견				
4. 기 타				

어청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6 - 134호

조촌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촌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 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01. 16. ~ 02. 06. (22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01. 16. ~ 02. 06. (22일간)

4.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개야도 지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산1-20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구	가	20,000	급경사지 붕괴로 상습적인 주거지 및 인명 피해발생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조촌1지구	2027. ~ 2031.	49,800	• 우수관로 정비(L=2,648m) • 우수유출저감시설 1개소	

※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내용,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

· 전 화 : 063) 454-3862

· 팩 스 : 063) 454-603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1. 현황 및 지형도면 등 각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붙임1>

□ 침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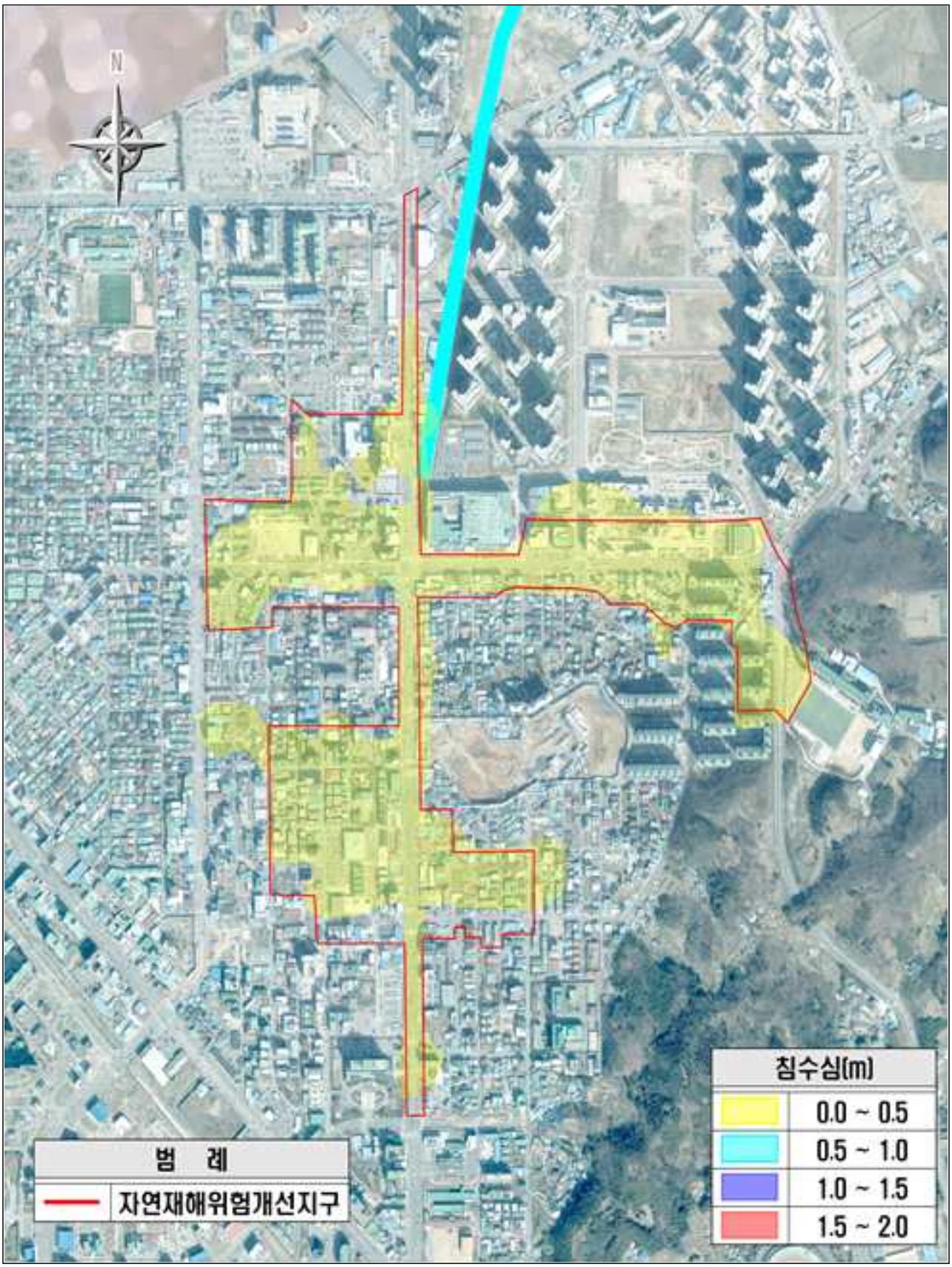

□ 사업계획 단면도 또는 상세도

□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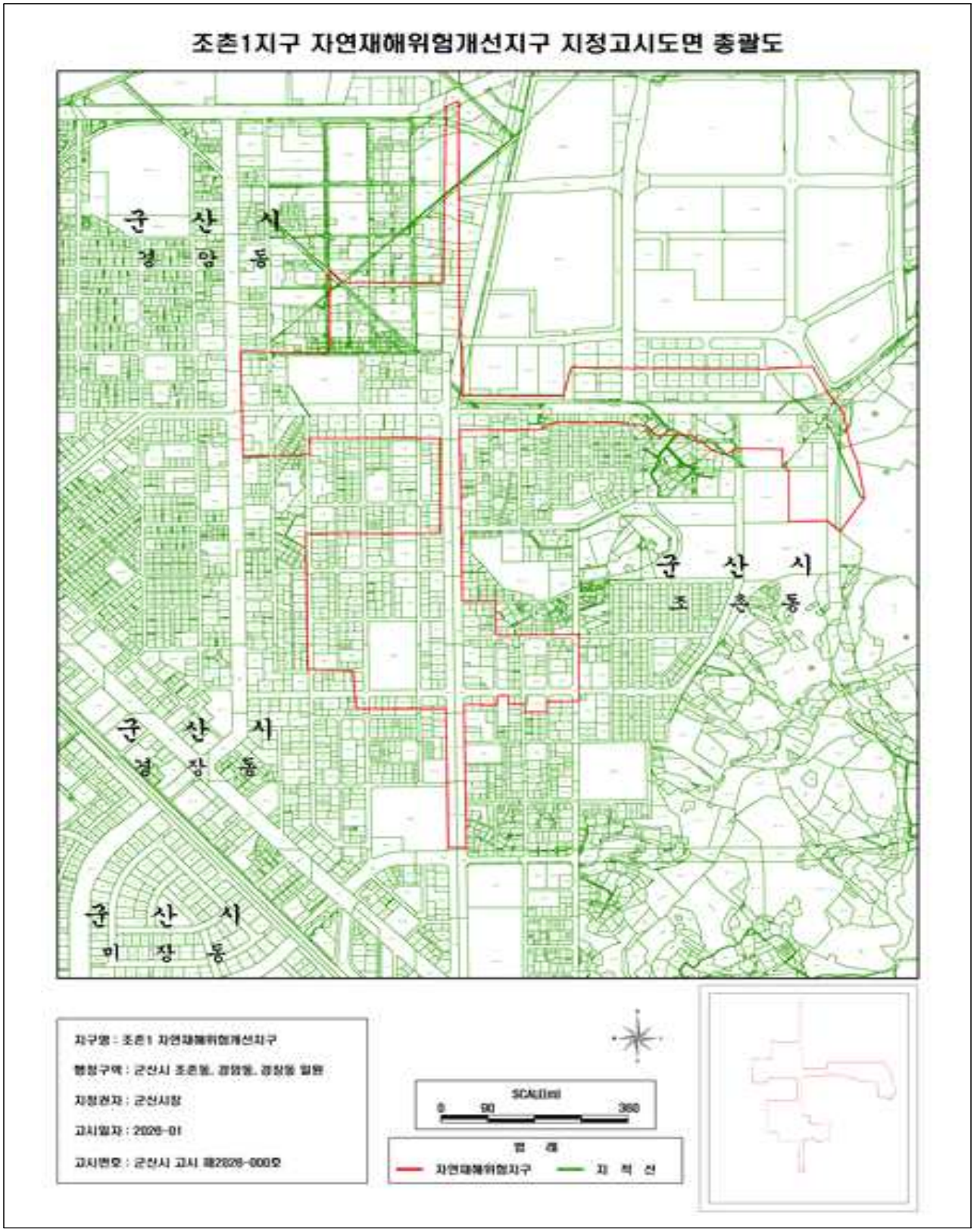

□ 피해사진1

(피해기간 2025년 09월 집중호우 / 조촌동 일원)

피 해 현 황

□ 피해사진2

(피해기간 2025년 09월 집중호우 / 조촌동 사거리)

피 해 현 황

□ 피해사진3

(피해기간 2025년 09월 집중호우 / 삼성아파트)

피 해 현 황

□ 피해사진4

(피해기간 2025년 09월 집중호우 / 양안로 51번지 일원)

피 해 현 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일반번호		
3. 의 견				
4. 기 타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6-13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5-184호(2025.10.10.) 및 제2025-208호(2025.11.14.)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외 6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수소파워트레인 시험동 등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176,895.9㎡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내용
176,895.9	주11동부2동/지상3층	7,458.77 * 건폐율 4.22%	8,946.33 * 용적률 5.06%	금회 교육연구시설 증축

- (금회) 주9동/1층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499.86㎡, 주10동/1층 교육연구시설(전기실) 연면적 20㎡, 주11동/1층 교육연구시설(컴프레샤실) 연면적 36.26㎡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신성장산업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10. 10. ~ 2026. 12. 31.(준공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포면 나포리	851	잡	154,109.9	154,109.9	군산시					
2	“	729-4	잡	408	408	군산시					
3	“	312-5	전	2,483	2,483	군산시					
4	“	산16-6	임	5,713	5,713	군산시					
5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6	“	산18-1	임	683	683	군산시					
7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계				176,895.9	176,895.9						

군산시 공고 제2026-1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5-224호(2025.12.5.)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나. 명 칭 : 군산교도소 대체복무 보관창고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182,890㎡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내용
182,890	주50동/ 지하2층~지상4층	22,569.77 * 건폐율 12.34%	43,979.48 * 용적률 21.70%	금회 교정시설(교도소) 증축

- (금회) 주1개동(50동)/1층 교정시설(교도소) 연면적 66㎡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교도소장

나. 주 소 :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12. 5. ~ 2026. 1. 31.(준공 2026. 1. 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구읍 옥정리	65	대	182,890	182,890	국 (법무부)					
계				182,890	182,890						

군산시 공고 제2026-25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3-59호(2023.4.2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6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621번지 외 1필지 일원
(구 지번 : 지곡동 64-35번지 외 24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
나. 명 칭 : 지곡동 126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노선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내용			비 고
	연 장	폭 원	최초결정일	연 장	폭 원	면 적	
대로2-11	990m	30~33m	전북고111 ('95.6.29.)	105m	3m	278.1㎡	완화차로 설치
소로1-251	241m	11.5~14.5m	군산고210 ('96.6.1.)	241m	11.5~14.5m	1,441.2㎡	폭원확장 개설
소로2-554	348m	8m	군산고210 ('96.6.1.)	-	-	1㎡	가각부 조정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준공면적 반영(1,720㎡ → 1,72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코리아신탁㈜ 대표 변문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4. 21. ~ 2027. 12. 31.(준공 2026. 1. 16.)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621	도	1,442.2	1,44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2	지곡동	622	도	278.1	27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계		2필지			1,720.3						